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조·수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

가. 다른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무게범위를 말한다)가 같은 경우

나. 다른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보다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적은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p> <p>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p> <p>①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조·수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다른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무게범위를 말한다)가 같은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다른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보다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적</u></p>

② (생략)	<u>은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83